

제 호

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 :

2. 대 표 자 : (생년월일 :)

3. 주 소 :

4. 소 재 지 :

5. 지정조건 :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직인